공직선거법위반

[서울중앙지방법원, 2006.6.29, 2006고합333]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사】 이종철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바른 담당 변호사 이충상외 1인

【주문】

】 피고인을 벌금 1,500,000원에 처한다.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

【이유】

】